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51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김소희·김성원·김미애

곽규택 · 김상훈 · 주호영

김선교 • 박준태 • 조경태

김예지 · 서명옥 · 고동진
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·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.

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 복하여 처분할 수 없다.

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9조(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)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	제28조(페기물처리업자에 대한
과징금 처분) ① ~ ⑤ (생	과징금 처분) ① ~ ⑤ (현행과
략)	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
	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
	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다.
<u> <신 설></u>	제69조(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
	특례)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
	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
	료를 부과할 수 없다.